

포항시 나잠어업(해녀)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15일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1월 6일 김영헌 의원 등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6일
- 다. 상정일자
 - 제31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3. 11. 1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영헌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“포항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”로 변경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의견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3. 관련법령

- 「수산업법 시행령」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재각)

- 본 조례안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

- 검토결과,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나잠어업인 복지 및 소득증대 조업환경 개선, 문화전승 등 나잠어업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가능하며 나잠어업 문화 가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교육·행사는 물론 유무형의 문화 연계 콘텐츠개발로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